

의안번호	2219839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6.7.14.
추계번호	26D3419

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공소시효의 배제)	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	재량규정
2	안 제5조 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	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음	재량규정
3	안 제6호 (재심사유에 관한 특례)	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 (공소시효의 배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 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	
3	안 제6호 (재심사유에 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, 재심사유의 특례를 신설하여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
 - 제정안에 따른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 및 상해치사의,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폭행·가혹치사의 죄(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), 군의 지휘관이 범한 가혹 행위죄(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) 등을 포함함
- 제정안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재심 청구가 가능해지면, 이후 소송 및 재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금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 발생
-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청구 제기 건수, 재심 청구 건수, 인용 여부 및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의사, 개별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- 따라서, 제정안에 따른 장래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동 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광근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광근	02-6788-4831	kklee@nabo.go.kr